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2026.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 차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2.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등 세부사항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4. 거짓부정 등록
5.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회·확인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요

목적

합리적, 효율적 농업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농업경영체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량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 농업경영체 등록 법적 세부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 ✓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 ✓ 제6조의3(등록정보정정등에대한이의신청특례),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2004.2.

농업·농촌 종합대책 발표

2006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당시 명칭 “농가등록제”) 도입 방안 구체화

2007.9.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시범사업

2008.6.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본격 시행

2009.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농관원 중심 농업경영정보 등록제의 상시관리체계 구축

2013.8.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직불제 사업 통합관리

2014

- 농업경영정보 등록범위 확대 및 일제 현행화
-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 신청 및 접수(~'19)
- 농업경영체 기반 농림사업 연계 추진

2015

농관원 맞춤형농정과(전담조직) 설치

2020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3년) 신설, 직권정정 완화,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접수 분리

2021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강화, 확인서·증명서의 팩스발급 중지

2022.10.

임대차 농지의 등록기준 개선, 농업법인 등록기준 확인방법 개선

2023.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4.2.17. 시행)

2026.1.12.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개정 (제정: 2024.10.1.)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 경영정보 등록 관리 강화

법률 개정

➤ 단순 등록에서 실경작 확인 등 내실화

- 「농어업경영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농관원 고시 제정('24.10.10)
 - 법령 위임 사항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과 증명 서류의 종류 및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 업무처리 지침 확정 ('24.12.10.)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2024.2.17.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

2024.10.10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제정

2024.12.10.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 업무처리
지침 확정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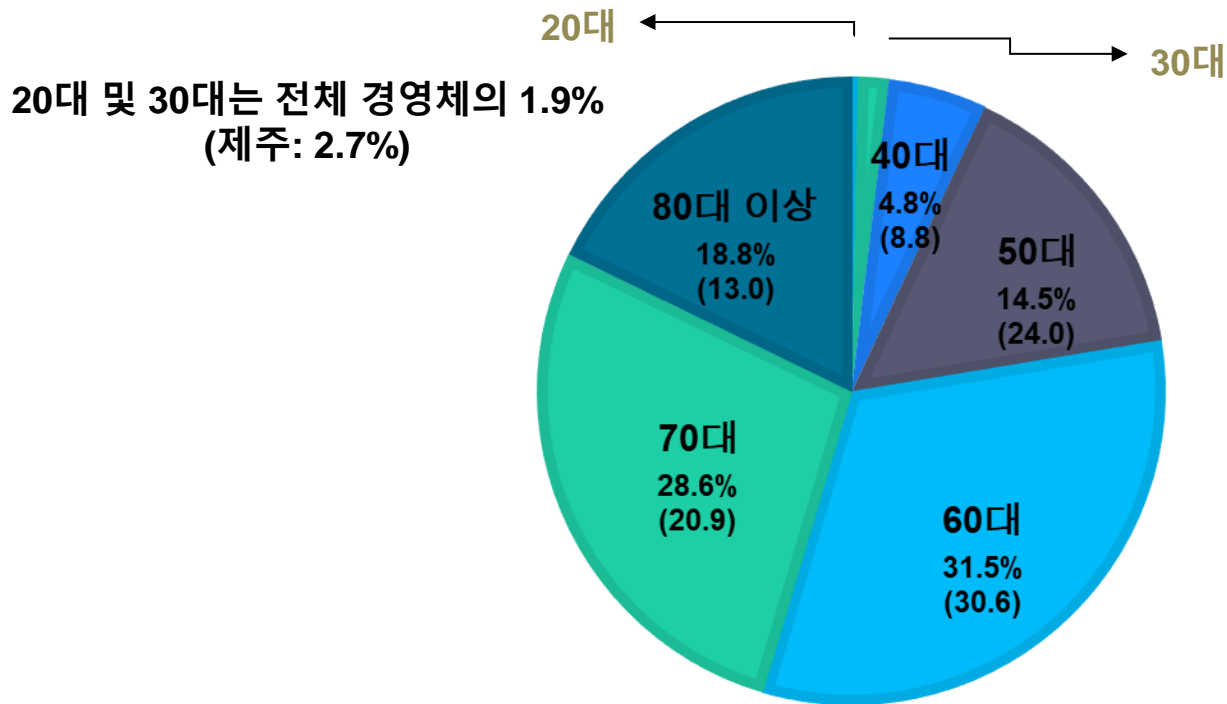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구 분	'21	'22	'23	'24	'25
• 경영체 등록(천호)	1,778 (54.2)	1,828 (55.2)	1,840 (55.5)	1,841 (55.5)	1,838 (55.6)
- 신규등록(천건)	112 (2.9)	97 (3.0)	68 (2.4)	71 (2.3)	67 (2.2)
- 변경등록(천건)	786 (17.0)	912 (23.5)	844 (25.1)	776 (19.4)	822 (22.3)
- 등록말소(천건)	80 (2.7)	63 (1.9)	67 (2.2)	70 (2.2)	70 (2.1)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연령별 농업경영체 현황 ('25년말)

□ 60대 이상 **78%**이며, 60대는 **32%**, 80대 이상도 **18%**에 달함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경영체 수 (제주)	5.3 (0.1)	29.5 (1.4)	88.3 (4.9)	266.2 (13.3)	578.7 (17.0)	524.9 (11.6)	345.4 (7.3)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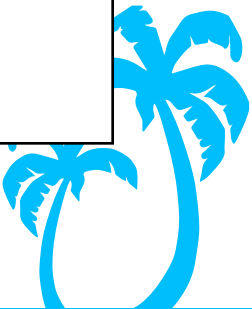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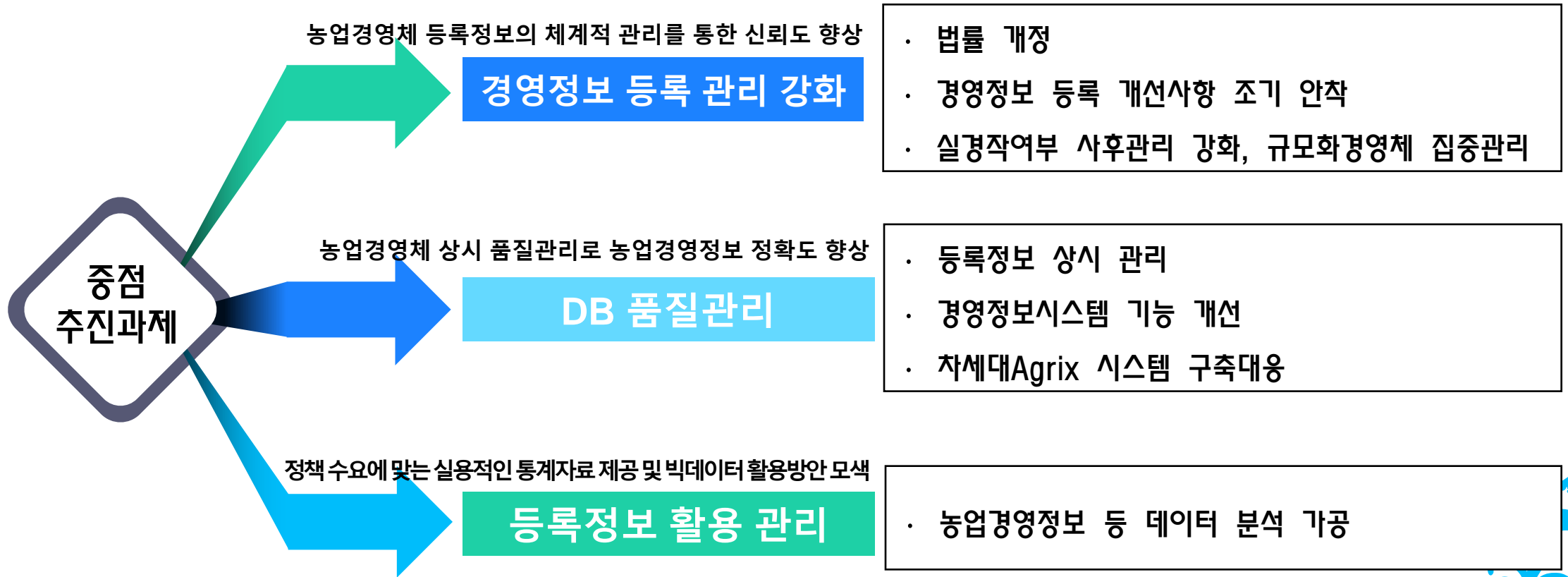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구분	분야	내용
공통	농지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시설현황, 품목별 재배면적 등
	가축·곤충 사육시설	·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사육품목(종), 사육규모 등
	기타 (연계정보)	· 보조금·용자 수령정보, 친환경 인증정보,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정보(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농업인	일반현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농 이력 등
	기타(연계정보)	·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
농업법인	일반현황	· 법인명, 대표자 및 구성원 정보, 출자규모 등
	기타	·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정보(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가공대상 품목 및 품목별 판매량 등) ·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자산, 부채 등

1. 농업경영정보 등록제도 개요

☑️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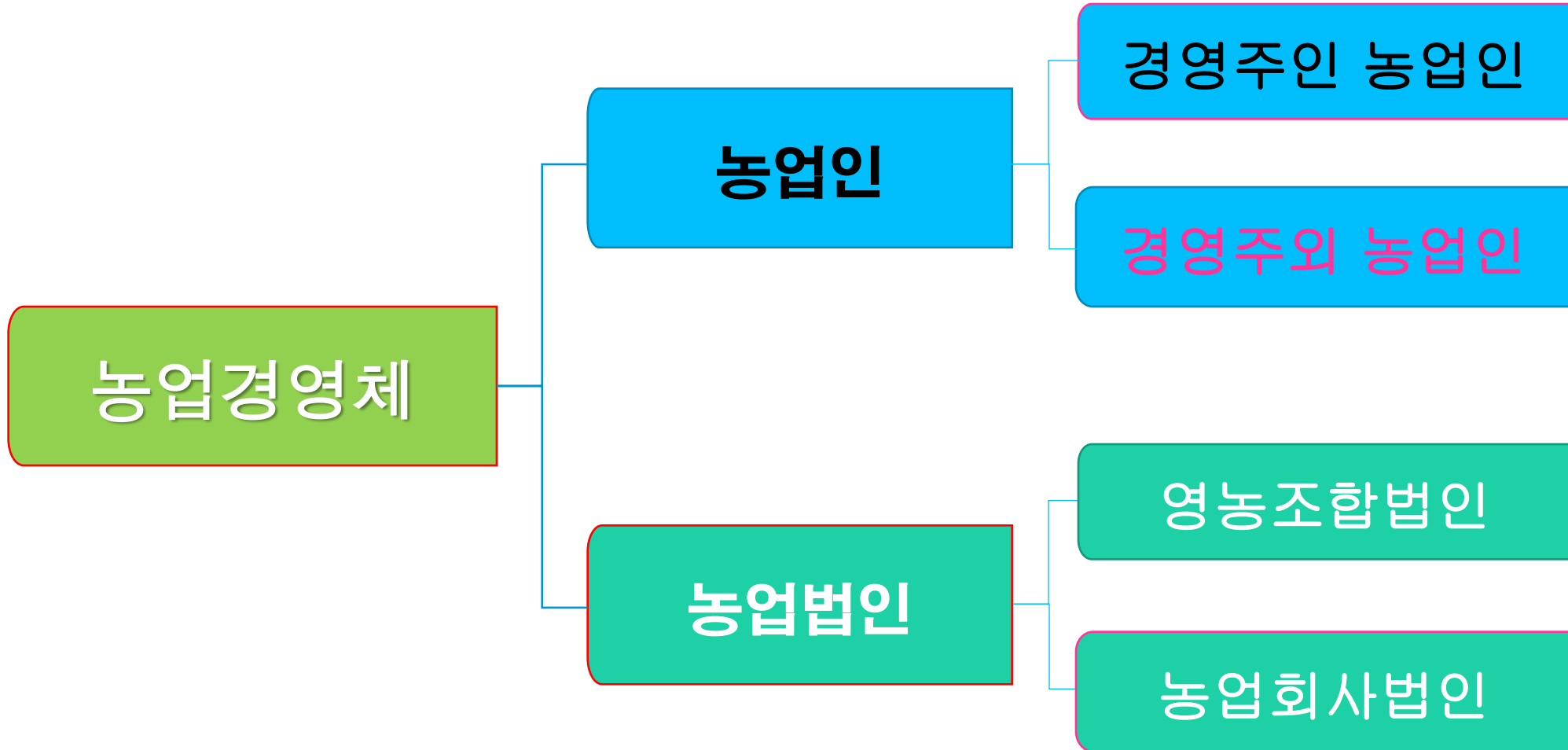
DATA 기반 농정 지원체계 구축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정의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등록 신청

■ **(신청대상) 농업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시기)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정식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 사육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은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농업e지)** 등의 방법으로 신청

* 대리신청: (공통)변호사, 법무사 등, (농업인)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농업법인) 법인의 임직원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심사 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 접수 후 처리기간 30일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

등록기준	증빙서류
<p>◆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 (휴경·폐경, 생산·개량시설 면적 제외)</p>	<p>① 농지대장 등 농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중 1가지 ③ 영농사실 확인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경작확인서(인삼재배농지만 적용), 「농지법 시행규칙」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중 1가지</p>
<p>◆ 농지에 660㎡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임업용은 제외)</p>	<p>① 농지대장 등 농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영농사실 확인서</p>
<p>◆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을 재배(임업용 종자·묘목은 제외)</p>	<p>① 농지대장 등 농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영농사실 확인서</p>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임야에 임업용 품목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뽕은감), 잣, 호두, 대주,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주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조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 제품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야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는 임업경영체 등록(산림청 문의)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

등록기준	증빙서류
<p>◆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p> <p>또는,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p>	<p>① 농지대장 등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p> <p>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p> <p>③ 영농사실 확인서</p> <p>④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p>
<p>◆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p>	<p>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p> <p>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p> <p>③ 영농사실 확인서</p> <p>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임차인 경우)</p>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기준

■ [별표 2]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증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기준

■ [별표 3]

농업경영체 등록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

등록기준	증빙서류
<p>◆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 (재배하는 바닥면적 165㎡ 이상)</p>	<p>①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영농사실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임차인 경우)</p>
<p>◆ 330㎡ 이상의 농지에서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에 지령이를 사육</p>	<p>① 농지대장 등 농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영농사실 확인서 ④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p>
<p>◆ 330㎡ 이상의 초지에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의 가축 사육기준을 충족하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발급규정 별표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p>	<p>① 초지조성허가증 등 초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영농사실 확인서 ④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임차인 경우)</p>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

등록기준	증빙서류
<p>◆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숙주나물)을 재배 (건축물대장상 재배사 면적 50㎡ 이상)</p>	<p>① 일반건축물대장 ② 사업자등록증 ③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④ 영농사실 확인서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임자인 경우)</p>
<p>◆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p>	<p>① 양봉농가 등록증 (이동 사육하는 경우 이동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제출)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임자인 경우) ④ 영농사실 확인서(이동하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p>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

등록기준	증빙서류
<p>◆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초지에서 다년생 개량목초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p>	<p>① 초지조성허가증 등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p> <p>② 농자재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중 1가지</p> <p>③ 영농사실 확인서</p> <p>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임차인 경우)</p>
<p>◆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고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의 곤충 사육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p>	<p>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p> <p>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p> <p>③ 영농사실 확인서</p> <p>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임차인 경우)</p>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세부기준

■ [별표 4]

농업경영체 등록 곤충사육 규모기준

구분	종류	수량(마리)
천적	고지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애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동애등애류	10,000
사료용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외 농업인)

<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 >

등록기준	증빙서류
<p>◆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p>	<p>① 경영주인 농업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p>◆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준농촌) 지역이면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p>	<p>②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실 확인서
<p>◆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이면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영농사실 확인을 받은 사람</p>	<p>③ 경영주외 농업인 중 일시적 취업자인 배우자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급여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 영농사실 확인서
<p>◆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p>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등록 가능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영주의 농업인)

< 가족원이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 >

등록기준	증빙서류
◆ 경영주인 농업인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 하고 서면 계약서 및 급여내역을 제출한 사람	① 경영주인 농업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최근 3개월 이상) ② 3개월 이상 급여지급 내역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동일세대)

✓ 농업경영체 등록은 동일세대의 가족인 경우

1개의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외 농업인) 원칙

※ 동일세대 2개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등록기준	증빙서류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면서, 각각 독립경영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 귀속 증명)	① 농지대장 등 농지의 정당한 권원 확인 서류 ② 농산물 판매(연간 120만원 이상) 영수증 ③ 농자재 구매 영수증 ④ 영농사실 확인서 ※ 각 경영체별로 서류 증빙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경계)

- ❖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 설치하여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농지(노지) :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등
 - * 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농지(시설) : 비닐, 유리, 경질판 등
 - * 다만, 냉·난방을 하는 시설의 경우 이웃 시설과의 냉·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축·곤충사육 시설 : 벽, 울타리 등
 - * 사료 급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도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다만, 단일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등 하나의 생산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한 경우 **등록기관장은 독립적인 운영을 확인(농산물 판매 내역, 실경작, 이웃 주민 의견 등 확인) 하여 등록할 수 있음**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록기준	
설립근거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인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대표자 포함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사업 범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범위)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⑥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부동산업 금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0조의5 등 참고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록기준	
설립근거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
농업인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1인이 총 출자액의 10% 이상 출자 * 단, 총출자액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8억원 이상 출자한 경우 가능
사업 범위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범위)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⑥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 (부대사업)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⑥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부동산업 금지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의5 등 참고

2.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농업법인 증빙서류)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변경신고확인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또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p>* 영농조합법인 설립·변경신고확인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생략 가능</p>	
형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인 확인 서류(대표자 포함 5인 이상), ② 조합원별 출자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인 확인 서류(1인 이상) ② 주주별 출자내역

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3.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의 변경신고는 언제 하나요?

등록 정보의 중요 사항이 변동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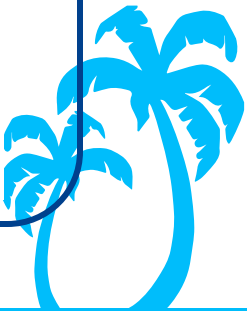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신고~!

중요사항

재배면적
변경

재배품목
변경

재배농지
변경



3-1. 변경등록 필요성과 법적 근거

□ (필요성) 경영체 등록정보는 다양한 용자·보조 사업의 기본요건으로 활용되므로 적기에 변경사항을 등록을 하여야 함

* 신규 등록은 경영체의 자율이나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의무 발생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지소재지, 농지면적, 재배품목, 품목별 재배면적 등



3-1. 변경등록 필요성과 법적 근거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1. 변경등록 필요성과 법적 근거

□ (법적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시행령 별표 3)



3-2.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

□ 2025년 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구분	정기 변경신고 기간	이행점검 기간	변경신고 대상 작물
하계작물	4~6월	7~9월	감귤, 벼, 사과, 배, 포도 등
추계작물	10~11월	10~11월	무, 배추 등
동계작물	12~1월	2~3월	마늘, 양파 등

※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등록정보 변경 시 연중 신고 가능



4. 거짓 부정등록

4. 거짓·부정 등록

□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31조의2(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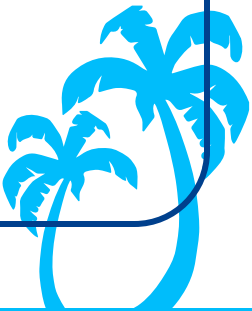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거짓 부정 등록 판단 기준

- **등록·변경등록 신청(전화 변경등록 요청 포함)**하는 내용에 사실이 아닌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농업경영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등록
- ☆ 등록신청 시 허위, 기만, 은폐 등 부정행위



5.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 확인

1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농업e지란?



- ▶▶ 기존 공무원 중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대체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로 구축 되는 농업인 중심의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으로 가족관계 등의 농업인 정보를 연계하고 농업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농업혁신 맞춤형 플랫폼
- ▶▶ 농업인이 직접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농업e지에 로그인하여 지도(GIS)에서 한눈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농식품사업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내 손 안에 보조금 **농업(e)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방문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도 쉽게!

모바일 앱, PC 등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업e지**를 이용해 보세요!

농업e지 주요 기능

- ☑ 신청 및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등
- ☑ 조회 및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맞춤형사업 추천, 보조사업 지도(map), 면세유 배정량, 재해보험 가입정보, 내 교육, 실시간 경락가 등

* 2026년 도입예정: 직불금 등 농식품사업 신청, 지능형 상담시스템 등



농업e지 접속 및 로그인 방법

▶ 접속방법

① 인터넷 검색

'농업e지' 또는 '농업이지'

검색

인터넷 검색창에
'농업e지' 또는 '농업이지' 검색

② QR코드 촬영



③ 농업e지 앱



농업e지 앱 다운로드 ('25년 9월 중)
*아이폰은 '26년 서비스 예정

▶ 로그인 방법

농업e지 접속 후
로그인 아이콘 선택

로그인 방식 선택
(휴대전화 또는 간편 인증)

개인정보 입력 또는
본인 확인 절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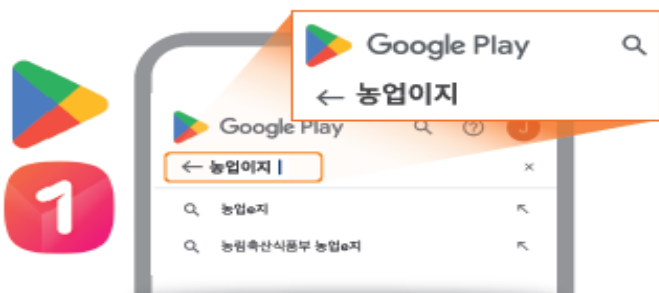
실명인증

로그인 완료

앱 설치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 방법

※ 별도 인증절차 없이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 플레이(play) 스토어에서
'농업e지(농업이지)' 검색 후 설치('25년 9월 중)



*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는 '26년 1월 서비스 예정

2 농업e지 앱 실행 후 로그인
(휴대전화 또는 간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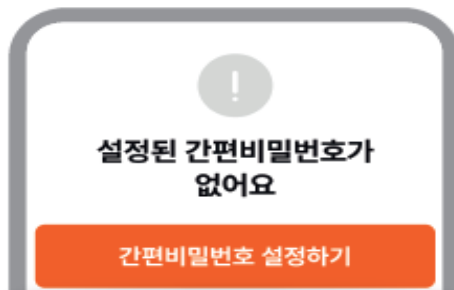
3 앱 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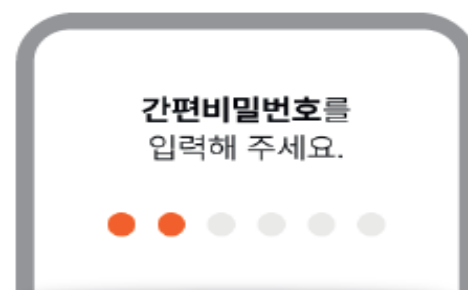
4 전체메뉴 하단의
'간편비밀번호 설정' 선택



5 간편비밀번호 설정하기



6 사용할 6자리 숫자 입력하면
간편비밀번호 등록 완료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방법(요약)

로그인 후 '농업경영체
온라인신청' 선택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선택

약관동의

정보수정 후
저장

신청내용 확인
및 완료

농업경영체관리 > 농업경영체 온라인신청

농업경영체 등록했던
정보를 변경하려면?

증빙서류는 농업경영체 안내를 참고하여 등
록 전에 준비하시면 편해요.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영농이력

농업 시작 형태 ①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농업 종사 형태

전업

겸업

농업 시작 연도

2004 년

농업 종사 기간

35 년

이전

저장하기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김농부님의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
청은 처리기간이 30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90일이 소요돼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존(3종)

- 농관원 방문
- 전화
- 콜센터(1644-8778)
- ※ 전화, 콜센터 요청에 의한 팩스발급 종료(21.7.16.)

확대(5종)

- 전국 읍면동 사무소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www.gov.kr)
- 온라인(www.nongupez.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8.1. 증명서·확인서)

['17.2월] 온라인 발급(www.agrix.go.kr)

['19.10월] 무인민원 발급기(전국 44백개소)

['20.3월] 정부24(www.gov.kr)

['20.8월] 농협 조합원 확인 목적 조회 개시
· ['21.6월]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대출 확인용 조회 개시

['20.9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전국 37백개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민원창구 발급

['25.9월] 온라인 차세대 시스템 **농업e지**(www.nongupez.go.kr)
· 언제어디서나 pc, 모바일(앱)으로 발급

An aerial photograph of a tropical beach. The water is a vibrant turquoise color, transitioning to a deeper blue further out. A white sandy beach curves along the left side, bordered by lush green vegetation. Several people are visible on the beach and in the shallow water. A small boat is in the water near the shore. The sky is a clear, bright blue with a few wispy clouds. In the top right and bottom right corners, there are decorative white diagonal lines.

감사합니다.